

소 장

원 고 000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해서 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인 원고는 2011. 10. 28. 피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2011. 1. 1.~2011. 10. 28.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개최한 회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정보를 공개청구하였

습니다(갑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참조).

2. 피고의 일부 거부(정보부분공개) 처분

가. 피고는 2011. 11. 7.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1. 1. ~ 2011. 10. 28.) 개최일시, 참석위원, 의안(안건) 및 결정사항'은 공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나. 피고는 위 공개거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검토

피고가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선거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며, 회의록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개개인의 소신있는 발언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개를 통하여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밀실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정이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비공개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 위원회 회의의 공개 원칙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들은 대부분 위원회의 의사를 공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은 모두 위원회의 의사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위원회 공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